경제혁신 3개년 계획 |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
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7월 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7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7. 7(목)	담당부서	석유산업과
담당과장	과장 박재영 (044-203-5220)	담 당 자	사무관 박영진 (044-203-5226)

농업용 면세유 가격 전면 공개

- 주유소간 경쟁 촉진으로 면세유 판매가격 인하 기대 -

□ **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이 오피넷*을 통해 전면 공개**된다.

* **오피넷** : 정유사, 주유소 등이 보고한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유가정보시스템(www.opinet.co.kr)

○ 그동안은 가격공개에 동의한 **일부 주유소**(1,033개, 전체의 22%)**만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**했으나,

-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'16.7.7부터는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**주유소 4,621개 전체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석유공사에 보고하고 공개**하도록 했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, 이하 산업부)는 이를 통해 **주유소간 가격경쟁이 촉진**되고 농업인들이 면세유 판매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또 **면세유의 배달료도 판매가격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표시***된다.

* 주유소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「면세유 가격표시판」에 면세유의 면세전 가격, 면세액, 면세유 판매가격(면세유 최종 구매가격), 배달료 등을 차례로 표시

○ 배달판매 위주인 면세유의 경우, 그동안 **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과다 책정** 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**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**해 왔다.

○ 이에 따라 산업부는 '16.7월말까지 「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」(고시)를 개정하여 주유소로 하여금 **배달료를 별도 표시**하게 했다.

○ 앞으로 면세유의 배달료를 별도 표시할 경우 **농업인들이 더욱 쉽게 가격체계를 이해**할 수 있게 되고 주유소도 배달료를 과도하게 받을 수 없게 되어 **폭리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**된다.

○ 또한, **면세유 판매가격*과 배달료도 주유소간 비교도 가능**해져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**면세유 가격의 인하를 유도**할 것으로 보인다.

* (기존) 면세유 판매가격(배달료 포함) = 면세전 가격-면세액
(개선) 면세유 판매가격(배달료 제외) = 면세전 가격-면세액, **배달료 별도 표시**

□ 한편, 산업부는 이번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석유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부여한 **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'17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**해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다.

○ 등 지원을 통해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('16.6월 현재 전체 석유거래의 8.6%)가 확대할 경우 **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되고** 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**석유제품의 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**된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○ 일반석유제품과 달리 수입부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던 **바이오디젤 포함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수입부과금을 징수**할 수 있도록 했다.

○ 아울러 **마리나 항만**(아라마리나 등 32개)**에 선박 급유 주유소를 설립하는 경우 실익이 적은* 공중화장실 설치의무를 면제**했다.

* 일반적으로 마리나항만 선박계류장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, 레저선박 내부에도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주유소에 화장실을 설치할 실익이 적음

□ 산업부는 앞으로도 석유판매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석유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**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**할 계획이며,

○ 특히,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높여 농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 도록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**제도개선 노력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**이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7-07 17:17:32

참고 1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주요 개정내용
2. 면세유 가격정보 이용방법
3. 면세유 가격표시 방법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박영진 사무관(044-203-52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내용

□ 추진 경과

○ 석유제품 **유통시장의 투명성**을 높이고, **가격경쟁을 촉진**하여 **판매가격을 낮추도록 유도**하며,

- 석유 **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형평성 제고**와 선박에 주유하는 **주유소의 등록요건을 완화**할 수 있도록 시행령안 마련

○ 부처협의('16.4.12~4.22), 입법예고(4.15~5.25), 규제심사(6.17), 법제처 심사(6.23), 차관회의(6.30), 국무회의(7.4), 공포(7.7)

□ 주요 내용

①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 보고·공개 근거

○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**주유소별로 판매가격을 보고**하도록 하고 이를 **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**하도록 규정 마련(안 제42조의2)

②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과금의 환급기한 연장 근거

○ **석유유통시장의 경쟁촉진**을 위해 전자상거래로 거래 한 **석유제품 수입·판매 부과금의 환급기한을 1년 연장***(안 제27조)

* 석유제품의 통관·거래 기한을 '16.6.30일까지에서 '17.6.30까지로 연장

③ 바이오디젤(BD) 포함 석유에 수입부과금 징수

○ **일반 석유제품과 BD포함 석유제품과의 형평성 제고** 등을 위해 BD포함 석유제품에 수입부과금을 징수(안 별표3)

④ 선박급유 주유소의 등록 요건 완화

○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적은 **선박에 주유하는 주유소의 공중화장실 설치의무를 면제**하여 운영자의 부담 완화(안 별표2)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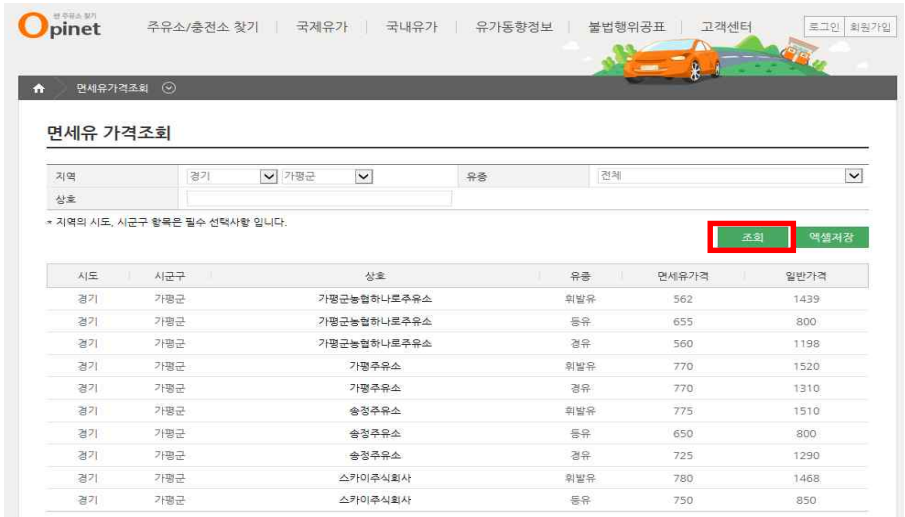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7-07 17:17:32

참고2 면세유 가격정보 이용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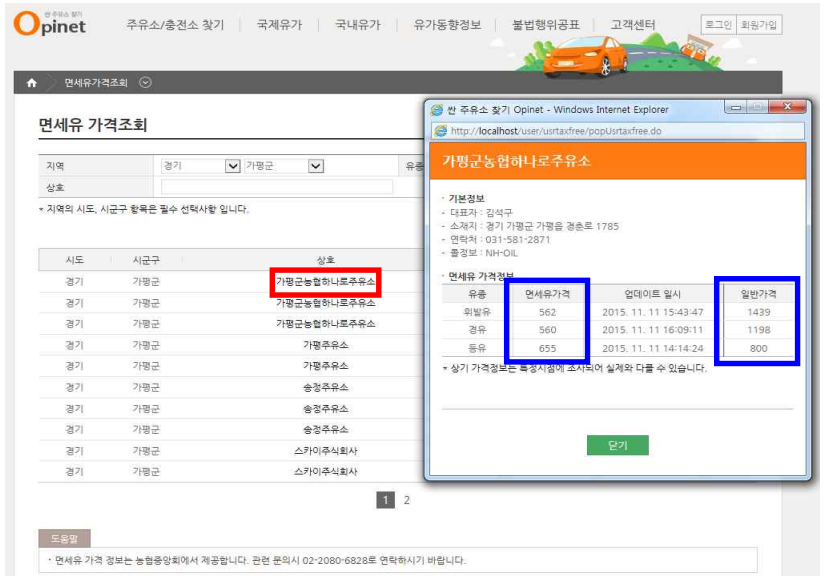
1.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(www.opinet.co.kr)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우측 상단 '면세유 가격' 클릭



2.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 '조회' 클릭



3. 주유소 '상호'를 클릭하면 면세유 가격 및 세부 정보 조회 가능

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참고3 면세유 가격 표시방법

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 방법 [변경 前 예시]

유종	면세전 가격	면세액	면세유 판매가격
휘발유	○,○○○원	○○○원	○,○○○원
경유	○,○○○원	○○○원	○,○○○원
등유	○,○○○원	○○○원	○,○○○원

⇩

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 방법 [변경 後 예시]

유종	면세유 정상가격	면세액	면세유 판매가격	기타(배달료 등)
휘발유	○,○○○원	○○○원	○,○○○원	-
경유	○,○○○원	○○○원	○,○○○원	<예시> 정액 : ○○○원 거리별 : ○○○원/km
등유	○,○○○원	○○○원	○,○○○원	<예시> 정액 : ○○○원 거리별 : ○○○원/km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7-07 17:17:32